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안도걸 · 임오경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 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2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입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입양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양휴가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제110조제1호 중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6항, 제74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74조의3(입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
	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
	의 입양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
	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
	<u>한다.</u>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입
	양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
	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휴가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략)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u>제74조제6항</u>, 제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1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
<u> 의3제1항 • 제2항</u>
2. (현행과 같음)
제114조(벌칙)
1
<u>제74</u> 조제6항,
<u>제74조의3제3항</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